

# 2025. 2. 18. 보도자료

공보관실 02)708-3411 / 팩스 02)766-7757

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



## 제 목 : 2월 변론 안내

- 헌법재판소는 오는 2. 19.(수) 16: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사건번호 및 사건명	청구인 (대리인)	피청구인 (대리인)	비고
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	국회의원 권성동 외 107인 (법무법인 도우화산)	국회의장 (변호사 노희범)	

붙임 관련사건 보도자료 1부. 끝.

# 보도자료

##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

[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]

### [ 공개 변론 ]

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19일 오후 4시 대심판정에서, 2024헌라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. 이 사건은, 국회의장이 2024. 12. 27.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'국무총리 [한덕수] 탄핵소추안' 을 가결 선포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된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으로,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변론을 들은 뒤, 권한침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.



2025. 2. 18.

헌법재판소 공보관실

## □ 사건개요

- 청구인들은 국민의힘 소속 제22대 국회의원이다.
- 박성준 등 170명의 국회의원은 2024. 12. 26.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‘국무총리(한덕수) 탄핵소추안’을 발의하였다. 피청구인(국회의장)은 2024. 12. 27. 제420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본회의에서 위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한 후,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. 피청구인은 2024. 12. 27. 소추의결서 등본을 피소추자 한덕수에게 송달하였다.
-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① 2024. 12. 27.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‘국무총리(한덕수) 탄핵소추안’(이하, ‘이 사건 탄핵소추안’이라고 한다)을 가결 선포한 행위(이하, ‘이 사건 가결선포행위’라고 한다) 및 ② 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송달한 행위(이하, ‘이 사건 송달행위’라고 한다)가 헌법 및 국회법에 부여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위 탄핵소추안 관련 심의·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, 2024. 12. 27. 피청구인 행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.

## □ 청구취지

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4. 12. 27. 국회본회의에 상정된 ‘국무총리(한덕수) 탄핵소추안’(의안번호 2206961)을 가결·선포한 행위 및 소추의결서를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송달한 행위는,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, 위 안건에 대한 심의·표결권을 침해한 것이고, 피청구인의 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한다.

## □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

-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·조사할지에 관한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, 해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 뒤 가결 선포하였다. 이로 인해 청구인들은 탄핵소추 사유를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상실하였고,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의·표결권이 침해되었다.

- 피청구인은 임의로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 정족수(‘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’)를 적용하여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. 이는 위 탄핵소추안에 대한 청구인들의 부결표 행사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으로, 궁극적으로는 청구인들의 표결권을 침해한다.
-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 및 송달행위는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과 심의·표결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.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절차적·실체적 위헌·위법성이 중대하므로, 단순히 청구인들의 권한 침해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.

### □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

- 이 사건 송달행위는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부수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, 독자적으로 청구인들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. 또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‘국민대표권’은 청구인들에 부여된 ‘심의·표결권’과 별개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.
-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지는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의 의사정리권한에 속하는 재량사항이다.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정족수는 ‘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’으로 보아야 하며,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상정부터 가결 선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들의 표결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된 사실도 없다. 따라서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심의·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.
-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며,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행위로 청구인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.

### □ 주요 쟁점

- 국회의장인 피청구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의 의결 정족수에 따라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해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·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
□ 당사자

○ 국회의원 권성동 외 107인

대리인 법무법인 도우화산(담당변호사 권오현)

○ 국회의장

대리인 변호사 노희범